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6
----------	-----

2023. 9. 7.(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9월 7일

-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사유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위촉·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위촉 근거·임기·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안 제16조)

○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지역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의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건축디자인 품질이 저하되고 도시경관이 악화되었음. 도시경관의 창조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북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공간계획 및 공공건축 사업에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되었음.
- 「건축기본법」 제23조⁶⁾에 따르면, 건축 관련 민원, 설계 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⁷⁾는 위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요건, 업무 범위, 보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각각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당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

-
- 6)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고, 위촉 및 임기, 수당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또한, 안 제17조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위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조항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자격으로만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는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 법령에 따라 총괄·공공건축가를 위촉하도록 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함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지연이나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 일체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p> <p><u>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u></p> <p><u>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u>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도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u> <u>2.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u> <u>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u> <u>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u>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 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현상 공모, 용역 수행 등 일체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16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신 설>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 발취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기본법」 제23조)
- 민간전문가의 보수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4항)

3. 관련조문

- 민간전문가 참여 근거

「건축기본법」 제23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지급 근거

「건축기본법」 제21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2027년(5년)
- 단가산출

- 인건비 및 자문비, 여비 : 130,000천원

-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술사) 적용, 자문비 도 위원회 수당 규정 적용,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총괄건축가 인건비	공공건축가 인건비(사업책임)	공공건축가 자문비	여비
금 액	127,898	37,488	39,050	36,000	15,360
산 출	총괄건축가 1 명, 공공건축가 15 명	390,500원/일× 8일근무/월× 12개월	390,500원/일× 5일(평균)× 20건	100천원× 2회/월× 12개월× 15명	40,000원× 2일× 12개월× 16명

나. 추계 결과 : 5년간 637,445천원 소요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27,898	130,194	132,559	134,995	137,504	663,150
인건비	76,538	78,834	81,199	83,635	86,144	406,350
자문비 및 여비	51,360	51,360	51,360	51,360	51,360	256,800

※ 최근 5년간 연평균 엔지니어링기술자(기술사) 임금 상승률 3.6%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박 병 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27,898	130,194	132,559	134,995	137,504	663,150	
인 건 비	76,538	78,834	81,199	83,635	86,144	406,350	
자문비 및 여비	51,360	51,360	51,360	51,360	51,360	256,800	
재원조달	127,898	130,194	132,559	134,995	137,504	663,150	
자체 수입	소 계	127,898	130,194	132,559	134,995	137,504	663,150
	지방세	127,898	130,194	132,559	134,995	137,504	663,150
	세외수입	-	-	-	-	-	-